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모집요강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모집요강

Contents

2020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3
1. 모집인원	5
2. 전형일정	6
3. 전형료 및 환불규정	7
4. 지원자격	8
5. 전형방법	14
6. 동점자처리기준	16
7. 제출서류	17
8. 장학혜택(새터민)	19
9.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공통 지원자격 안내	20
지원자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22
서식자료	28

01 2020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 1. 모집인원
- 2. 전형일정
- 3. 전형료 및 환불규정
- 4. 지원자격
- 5. 전형방법
- 6. 동점자처리기준
- 7. 제출서류
- 8. 장학혜택(새터민)
- 9.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공통 지원자격 안내



2020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2020학년도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								
3년 특례(모집인원내)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자녀, 기타재외국민자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12년 특례 및 새터민(모집인원외)			전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새터민					
1. 모집인원 및 전형 요소								
지원자격	모집단위	모집인원 (명)	전형방법		반영비율(%)			
					수강능력시험	면접	서류평가	비고
3년 특례	전학과(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33	일괄합산		100	-	-	면접 없음
	의학과	2	단계별 전형	1단계	100	-	-	1단계 10배수 선발
				2단계	60	40	-	
	간호학과	1	단계별 전형	1단계	100	-	-	1단계 10배수 선발
				2단계	60	40	-	
	12년 특례	전학과(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제한 없음	일괄합산		-	100	P/F
의학과		단계별 전형		1단계	100			1단계 20명 선발
				2단계	60	40		
새터민	전 학과(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	100	P/F	수강능력시험 없음	
	의학과, 간호학과			40	30	30	수능최저학력기준 있음	
2. 수강능력시험								
모집단위	출제분야	출제범위		출제문항		시험시간		
인문계열	영어(50점), 국어(50점)	한국 고교 교육과정 (국어는 고전 제외, 수학은 기하와벡터 제외)		각 25문항씩 총 50문항 (객관식 5지 선다형)		통합 90분		
자연계열	영어(50점), 수학(50점)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9.07.05.(금) 9:00 ~ 07.10.(수) 17:00까지		• 인터넷 접수				
수강능력시험		2019.07.21.(일) 10:00 ~ 11:30 예정		• 3년특례 : 전체 • 12년특례 : 의학과 • 새터민 : 의학과, 간호학과				
면접		2019.08.10.(토) 13:00 예정		• 3년특례 : 의학과, 간호학과 1단계 합격자 • 12년특례 : 전체 지원자(의학과 1단계 불합격자는 제외) • 새터민 : 전체 지원자 • 의학과 면접시간 별도 공지(오전 예정)				
최초 합격자발표		2019.09.03.(화) 16:00 예정		• 입학처 홈페이지(개별통보없음)				

2021학년도 전형 변경 예정사항		
구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영주교포	재직증명서 불필요	재직증명서 제출
새터민	검정고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등 인정 불가	(새터민에 한함) 국내 검정고시 인정 가능
해외근무자 자녀	배우자 동반 체류 의무 없음	해외근무자 및 배우자 모두 거주 및 체류일수 충족
유학생 자녀	지원 가능	지원 불가
본인만 외국인	지원 가능	지원 불가
제출서류	본인, 보호자 각 1부	본인, 부, 모 각 1부

01 모집인원

계열	대학명	모집단위	3년특례 :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자녀, 기타재외국민자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12년특례 : 전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새터민
			선발인원		선발유무	선발유무
			최대모집 가능인원	모집인원		
자연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7	9	○	○
		산업공학과★	4		○	○
		화학공학과★	2		○	○
		신소재공학과◆	2		○	○
		응용화학생명공학과◆	4		○	○
		환경안전공학과★	2		○	○
		건설시스템공학과★	2		○	○
		교통시스템공학과◆	2		○	○
		건축학과●	4		○	○
	정보통신 대학	전자공학과★	7	7	○	○
		소프트웨어학과◆	3		○	○
		사이버보안학과◆	1		○	○
		미디어학과◆	4		○	○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2	4	○	○
		물리학과◆	2		○	○
화학과◆		2	○		○	
생명과학과◆		2	○		○	
의과대학	의학과	2	2	○	○	
간호대학	※간호학과(4)	1	1	X	○	
인문	경영대학	경영학과	3	3	○	○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	5	○	○
		※영어영문학과◆(6)	3		○	○
		※불어불문학과◆(3)	2		○	○
		사학과◆	2		○	○
		문화콘텐츠학과◆	2		○	○
	사회과학 대학	경제학과	3	5	○	○
		행정학과	2		○	○
		심리학과	2		○	○
		사회학과	2		○	○
		정치외교학과	2		○	○
모집인원			36	36명 선발		

- ▶ **모집단위별 최대모집가능인원 범위 내에서 단과대학별 입학전형 성적순으로 모집인원을 선발**
ex) 인문대학 모집인원 총 5명에 해당하는 1~5위 학생의 지원학과가 각각 국어국문학과 1명, 영어영문학과 1명, 문화콘텐츠학과 3명일 경우 문화콘텐츠학과는 최대모집가능 인원 제한에 따라 2명만 선발함. 이로 인해 발생하는 1명의 미충원 인원은 문화콘텐츠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의 차순위자로 선발
- ▶ 12년특례의 경우 간호학과는 선발하지 않음
- ▶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으로부터 의학교육 평가인증 획득, 인증기간(2014.3~2020.2, 6년간), 간호대학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으로부터 간호교육프로그램(학사학위과정) 인증 획득, 인증기간(2018.6.14~2023.6.13, 5년간)
- ▶ 건축학과는 건축학전공은 5년제, 건축공학전공은 4년제로 학사 운영함
- ▶ ★ : 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 전공
◆ : 전공심화과정 운영 전공
● : 건축학과 건축학전공(5년제) - 심화과정 운영/건축공학전공(4년제) - 공학교육전문과정 운영
※ : 교직과정이 운영되는 전공으로 ()는 교직이수 가능 인원임(변동 가능), 2학년 진급 시 교직이수자 선발
- ▶ 공학교육전문과정 또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는 전공의 학생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해당 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제1전공 외에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함
- ▶ 지원 시 수시 6회 제한에 포함됨에 유의(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된 전형은 접수 취소)

구 분	일 시	장소 및 안내사항
원서접수	2019.07.05.(금) 09:00 ~ 07.10.(수) 17:00까지	* 인터넷으로만 접수함 - 입학처 홈페이지 : www.iajou.ac.kr - 원서접수 홈페이지(추후 공지 예정) * 접수기간에는 24시간 원서접수가 가능하나 마감 당일은 17:00까지만 접수
자기소개서 수정기간	2019.07.12.(금) 낮 12:00까지	* 자기소개서는 인터넷 작성본과 출력 제출본이 동일해야함 * 3년특례(의학과, 간호학과), 12년특례 및 새터민(전체)만 작성
서류제출	2019.07.12.(금)까지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등기우편, 택배, 방문 제출 가능) - 제출처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입학처 (울곡관 102호) 재외국민전형 담당자 * 해당 제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발송 시 내용을 필히 확인)
제출서류 확인	2019.07.16.(화) 16:00이후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수강능력시험	2019.07.21.(일) 10:00 ~ 11:30 예정	* 고사장 및 수험생 유의사항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 * 전형 당일 해당 고사장 확인 후 입실(별도 집결장소 없음) * 준비물 ① 수험표 ②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표기), 동사무소 발급 임시 신분증) ③ 필기도구 * 수험표와 신분증 미지참자는 입실 불가
	• 3년특례 : 전원 응시 • 12년특례 : 의학과만 응시 • 새터민 : 의학과, 간호학과만 응시	
1단계 합격자 발표	2019.07.30.(화) 16:00이후	• 3년특례 의학과, 간호학과 및 12년특례 의학과만 해당
	2019.08.10.(토) 13:00 예정(의학과는 별도 공지)	
면접	• 3년특례 : 의학과, 간호학과 1단계 합격자만 응시 • 12년특례, 새터민 : 전원 응시 (단, 의학과 1단계 불합격자는 제외)	
최초합격자 발표	2019.09.03.(화) 16:00이후	* 입학처 홈페이지(개별통보 없음, 본인 확인)
	새터민 의학과·간호학과 : 2019.12.10.(화) 예정	
최초합격자 등록	2019.12.11.(수) ~ 12.13.(금) 16:00까지	*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충원합격자 발표	2019.12.14.(토) ~ 12.19.(목) 21:00까지 [등록은 각 발표일 다음날 16:00까지 완료되어야 함]	* 3년특례만 해당함 * 입학처 홈페이지(개별 통보 없음) [단, 학교 사정에 따라 개별 전화통보 할 수도 있음]
충원합격자 등록 마감	2019.12.20.(금)	* 등록 마감시간 : 16:00까지
등록금 납부	2020.02.05.(수) ~ 02.07.(금)	* 정시 등록기간과 동일
최종 서류제출	2020.02.25.(화)까지	*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자인 최종합격자 * 원서접수 당시 3년 특례의 3년 기간 미충족자로서 3년충족 예정자인 최종합격자

- ▶ 3년특례는 미등록충원을 실시하며, 12년특례 및 새터민은 미등록충원을 실시하지 않음
- ▶ 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홈페이지/전화 충원합격자)는 이후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 전형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 또는 연락두절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 원서접수 시에는 출신학교 및 주소/전화번호, 학과/전공(해당자), 재학기간, 자기소개서 등을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야 함.
허위 기재할 경우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입학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 후 적발 시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제출서류가 도착하지 않거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 ▶ 원서접수 개시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외국발급 서류 예외)
-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 함
- ▶ 상기 각 일정은 학교 사정상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가. 전형료 : 150,000원

나. 전형료 환불

1)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타지원자의 피해방지(예 : 경쟁률 조작)를 위해 원칙적으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단, 아래의 사유에 한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

2) 전형료 반환사유(근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입학전형료))

-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②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③ 천재지변, 질병, 사고, 본인의 사망 등 수험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2)의 전형료 반환사유에 해당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팩스, 우편, 등기)해야 함

4) 2)의 전형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팩스, 우편, 등기) 후, 본교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이 신청시기에 따라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함

신청시기	환불금액
원서접수 마감 이전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전형료의 70%
원서접수 마감 4일 후부터 수강능력시험 전까지	전형료의 50%
수강능력시험 이후	반환하지 않음

※ 타대학과의 입학전형일정 중복 또는 개인사정 등의 경우에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입학전형 종료 후 전형료 수입과 지출을 결산한 결과 잔액이 발생할 경우, 전형료를 반환(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34조의 4(입학전형료) 제5항)

가. 3년 특례(모집인원내 :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자녀, 기타재외국민자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1) 공통사항

- 가) 12년(24학기)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재학기간은 국내 학제를 기준으로 함 :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학년)
- 나)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및 학력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2)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및 학력요건

자격구분		자격요건	학력요건(학생이수기간)
3 년 특 례 (모 집 인 원 내)	영주교포 자녀	부모, 학생 모두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영주한 교포자녀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외국에서 고등학교 1년(2개학기) 포함 중·고교 과정에 통산 3년(6개 학기) 이상 외국학교에 재학 (비연속 재학도 인정함)
	해외근무자 자녀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녀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①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② 해외상사직원 자녀 ③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④ 외국파견 대학 전임 교직원 자녀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 자녀	
	기타재외국민 자녀	부모와 학생 모두 합법적으로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자녀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① 외국인지회사근무자 자녀 ② 자영업자의 자녀 ③ 선교사의 자녀 ④ 유학생의 자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으로, 외국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학력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부모 모두 순수외국인인자(생득적 외국인), 복수국적자는 제외함	

3) 지원자격 인정 범위

구분		지원자격 인정범위	
3 년 특 례 (모 집 인 원 내)	해 외 근 무 자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상사직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준한 해외지사(해외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의 특파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교수 요원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외국에서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자
		외국파견 대학 전임 교직원	• 외국에 공식 파견 근무하거나 근무 후 귀국한 대학의 전임 교직원

※ 해외 근무자의 근무형태는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함(교육·연수·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는 제외)

※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음

※ 교육부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교원의 경우 해외근무자 공무원 자격을 준용함

※ 해외근무자 관련 상세 안내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4) 자격요건의 총 재학기간(24학기)

- 가) **국내학교간, 국내·국외학교간, 국외학교간 전·편입학에 의한 월반은 인정하지 않음**
- 나) 외국의 학교에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에 따라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이 경우 해당 학교장의 확인 후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라)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1개 학기 중복에 한하여 인정함. 이때,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그리고 외국학기와 국내학기가 중복인 경우 외국학기를 우선 인정함
- 마) **국내 고교 졸업자 및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국제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도 총 재학기간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함 (2020학년도 변경사항)**
- 바)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을 이수한 자는 제외함**

5) 해외학교 학년제에 따른 고졸학력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인정 · 불인정 사례

D : 국내학교 이수학기 / A : 외국학교 이수학기

자격요건과 학력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자격요건 : 12년(24학기)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전·편입에 의한 1개 학기 부족은 인정, 중복학기는 1개 학기에 한해 누락학기 대체가능)

학력요건 : 중·고등학교 기간 중 고등학교 1년 포함 외국이수학기 통산 총 6학기 이상(비연속 인정)

Case	학년 학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정여부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재학기간	A	A	A	A	A	A	A	A	A	A	A	A													불인정
2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인정
3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불인정
4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인정
5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인정								불인정
6	재학기간	D	D	D	D					D	D	D	D	D	D	D	D	인정	D	D	D					인정

Case	인정여부	상황	자격요건, 학력요건
1	불인정	학력요건(6학기)이 1개 학기 부족	- 자격요건 : 전·편입과정에서의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총 재학학기 23학기)로 만족 - 학력요건 : 총 5학기로 1개 학기 부족(자격미달)
2	인정	학력요건의 6학기가 비연속	- 자격요건 : 중복 재학학기(8-1, 8-2, 10-1)를 중복 산정하지 않더라도 총 재학학기 24학기를 충족 - 학력요건 : 중·고등학교 기간 중 외국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비연속 6개 학기(8-1, 8-2, 10-1~11-2)를 이수하여 기준 충족
3	불인정	학력요건의 고등학교 1년(2개 학기) 미포함	- 자격요건 : 총 24학기 충족 - 학력요건 : 6개 학기 중 고등학교과정이 1개 학기만 포함되어 학력요건 자격미달
4	인정	자격요건(24학기) 중 1개 학기 부족	- 자격요건 : 전·편입과정에서의 1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총 재학학기 23학기)로 만족 - 학력요건 : 6개 학기(10-1~12-2) 만족
5	불인정	복수의 중복학기로 누락학기 대체 인정	- 자격요건 : 총 재학 학기 21학기. 중복 학기(5-1, 5-2)는 누락 1개 학기로 대체 인정 가능함. 전·편입에 의한 1개 학기 부족을 인정하더라도 22학기로 부족(자격미달) - 학력요건 : 6개 학기(10-1~12-2) 만족
6	인정	중복학기로 복수의 누락학기 대체 인정	- 자격요건 : 총 재학 학기 21학기. 중복 학기(2-2)는 누락 학기(4-2)로, 중복 학기(6-2~7-1)은 누락 학기(9-1)로 대체 인정 가능함. 전·편입에 의한 1개 학기 부족을 인정하여 총 23학기로 자격 인정 - 학력요건 : 비연속 6개 학기(7-1~8-2, 11-2~12-2) 만족

6) 외국학교 소재지

가) 부모의 근무 국가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제3국 수학 미인정)

나)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교육 과정에서의 수학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7) 부모의 근무, 거주, 체류기간

가)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은 부모와 학생 모두 중첩하여 외국에서 거주 또는 상근한 기간만 인정함

(단, 해외 근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동반체류 의무 없음)

나) 해외거주·체류기간 산정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근무확인서, 재학기간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외거주·체류기간을 산정함

다) 해외학교의 방학, 공휴일 등에 따른 국내 체류기간은 해외 체류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라) 근무기간은 동반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순수한 근무기간(보통 재직증명서상의 근무기간) 으로 3년을 만족하면 되지만, 체류기간은 학생보호자 중첩된 동반체류기간 중에서만 판단함

전형유형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단위 : 년)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이수)	거주(영주)	체류	근무	거주(영주)	체류	거주(영주)	체류
영주교포자녀	3	2.25	2.25	3	2	2	3	2
해외근무자자녀	3	2.25	2.25	3	2	2	-	-
기타재외국민자녀	3	2.25	2.25	3	2	2	3	2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3	2.25	2.25	-	-	-	-	-
비고	※ 학생 거주, 체류기간은 각각의 1개 학년 기간마다 4분의 3 이상이어야 함 즉, 1개 학년 기간마다 273일 이상씩 총 819일 이상 이어야 함. 방학기간을 포함하나 졸업연도의 경우에는 졸업일까지로 환산하여 계산함			※ 보호자 및 배우자의 거주, 체류기간은 각각의 1개 학년 기간마다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즉, 1개 학년 기간마다 243일 이상씩 총729일 이상 이어야 함				
	※ 출입국증명서상 출국일과 입국일은 외국체류일수로 포함함							

※ 학생의 재학기간은 보호자와 함께 체류한 기간만을 인정함

-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나. 12년 특례 및 새터민(모집인원외 : 전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 새터민)

1) 공통사항

- 가) 12년(24학기) 이상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재학기간은 국내 학제를 기준으로 함 :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7~9학년, 고등학교 10~12학년)
- 나)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및 학력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2) 지원자격별 자격요건 및 학력요건

자격구분		자격요건	학력요건
12년 특례·새터민	전교육과정 이수자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모두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부모 모두 순수외국인인 자(생득적 외국인)는 제외함(순수외국인 별도 선발)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새터민	새터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새터민	한국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자 또는 초·중·고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 가)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한 경우 지원 불가함
- 나)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없음(단, 새터민 전형 중 의학과, 간호학과 지원자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함)

학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의학과	국어, 수학기,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간호학과	국어, 수학기,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되는 4개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함

3) 자격요건의 총 재학기간(24학기)

- 가) 국내학교간, 국내·국외학교간, 국외학교간 전·편입학에 의한 월반은 인정하지 않음
- 나) 외국의 학교에 전·편입하는 과정에서 해당국 간의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 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다)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에 따라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재학기간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이 경우 해당 학교장의 확인 후 공식적으로 발급된 월반 또는 조기 졸업에 대한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 라) 전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해당국가의 학제가 12년제 미만일 경우 해당국가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부를 빠짐없이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고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 마)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을 이수한 자는 제외함
- 바)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며,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학기의 경우 1개의 누락 학기 대체 가능)

※ 외국학과 국내학기 중복의 경우 외국학기를 우선으로 인정함

4) 전교육과정 외국학교 이수자 지원자격 세부사항

- 가) 해외 1개국 내에서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 나) 학제가 다른 해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해외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5) 외국학교 소재지

- 가)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외국학교로 인정하지 않음
- 나)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교육 과정에서의 수학 연한은 인정하지 않음



가. 지원자격별 전형방법

구분		선발방법	수강능력시험	면접	서류평가	계	비고
3년특례	전 학과(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100%	-	-	100%	면접없음
	의학과, 간호학과	1단계	100%	-	-	100%	1단계 10배수 선발
		2단계	60%	40%	-	100%	-
12년특례	전 학과(5쪽 모집인원 참고)	일괄합산	-	100%	P/F	100%	수강능력시험 없음
	의학과	1단계	100%	-	-	100%	1단계 20명 선발(예정)
		2단계	60%	40%	-	100%	-
새터민	전 학과(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일괄합산	-	100%	P/F	100%	수강능력시험 없음
	의학과, 간호학과	일괄합산	40%	30%	30%	100%	수능최저학력기준 있음*

※ 전형 결과 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 수능최저학력기준

학과	수능최저학력기준
의학과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간호학과	국어, 수학과, 영어, 과탐(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

※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반영되는 4개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 함

나. 수강능력시험

1) 대상 : 3년특례(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자녀, 기타재외국민자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12년특례 의학과,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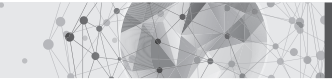
2) 평가방법 : 계열별(인문계, 자연계)로 구분하여 실시

모집단위	출제분야	출제범위	출제문항	시험시간
인문계열	영어(50점), 국어(50점)	한국 고교 교육과정 (국어는 고전 제외, 수학은 기하와벡터 제외)	각 25문항씩 총 50문항 (객관식 5지선다형)	통합 90분
자연계열	영어(50점), 수학(50점)			

다. 면접

1) 전 학과(의학과 제외, 간호학과 포함)

구분	내용(예정 사항임)
면접시간	• 15분 내외
면접대상	• 3년특례 간호학과 1단계 합격자(3년 특례는 간호학과, 의학과 외에 면접 없음) • 12년특례 전학과(단, 의학과 1단계 불합격자는 제외) • 새터민
면접진행방식	• 각 고사실별 면접위원 2명이 1명의 수험생을 평가 예정
평가내용	• 입학 후 수학과력 및 수험생의 특성 등에 대한 구술 면접 • 평가항목 : 고교활동, 인성 및 가치관, 지원동기 및 학업계획, 의사소통 및 표현력, 행동관찰 등



2) 의학과(3년특례, 12년특례, 새터민)

구분	내용(예정 사항임)	
면접시간	• 30분(고사실당 10분씩 3회) 내외	
면접대상	• 3년특례, 12년특례 의학과 1단계 합격자 및 새터민 의학과 지원자 전체	
면접진행방식	• 각 고사실별 면접위원 2명(총 6명)이 1명의 수험생을 평가 예정 • 수험생은 주제별 고사실(서류기반, 지성, 인성 총 3개)에서 면접진행 예정 • 지성(생명과학 유력) 및 인성에서는 제시문이 주어지며, 3~5분정도 사전 준비시간 제공할 예정	
평가내용	① 중·고교성적, 자기소개서, AP, SAT, GCE-A Level, IB등 해외 학력평가 자료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과학, 기술관련 서술형 제시문에 대한 논리적 해석능력과 과학적인 사고력을 측정 ② 우리말로 된 긴 지문을 주어 질문의 요지파악 능력, 답변의 간결성과 적절성 등 한국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	
평가항목	서류기반	① 학업능력 ② 전공 적합성 ③ 자기개발 ④ 리더십
	지성	① 능력/열정 ② 창의성/도전성 등
	인성	① 윤리/소통/사회적 책무 ② 리더십/다양성/인문소양 등

※ 시간, 진행 및 세부 평가항목, 평가위원수 등이 소폭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1단계 합격자 발표 시 안내될 예정임

라. 서류평가

1) 대상 :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

2) 서류평가 :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아래의 항목을 평가함

평가항목	세부요소
학업능력(학업잠재력)	대학수학 기초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등
전공적합성	전공선택 동기 및 관심도
	학업계획 등
인성 및 태도	대인관계(협동성) 및 교과외 활동
	일반 인성(책임감, 성실성 등) 등

가. 1단계 합격자 선발 시 : 동점자 전체 선발

나. 최종 합격자 선발 시

순위	판정기준
1순위 [수강능력시험]	가. 총점 - 수강능력시험 총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 계열별 과목 우선순위*에 따라 과목별 총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나.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정답 수 - 총점의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정답 수가 많은 순으로 판정함 - 계열별 과목 우선순위*에 따라 과목별 총점의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정답수가 많은 순으로 판정함 * 계열별 과목우선 순위 - 인문 : 국어→영어/자연 : 수학→영어
2순위 [면 접] (해당자)	- 총점을 기준으로 판정함 - 총점이 같은 경우 평가항목 비중이 큰 항목의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판정함(단, 평가항목의 배점이 모두 동일한 경우, 항목별 평균점수를 비교하여, 평균점수가 높은 항목이 많은 순으로 판정함)
3순위 [재학 학기 수]	- 외국학교 재학학기 수(중복학기 제외)로 판정함 - 외국학교 재학학기 수가 같을 경우, 총 재학학기 수(중복학기 제외)로 판정함

- ※ 12년특례 및 새터민(의학과, 간호학과 제외)은 1순위[수강능력시험]를 적용하지 않음(1순위[수강능력시험]은 3년특례, 12년특례 의학과,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만 적용)
- ※ 면접 미 실시 전형은 2순위[면접]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의학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3년특례는 면접 미 실시)
- ※ 상기 각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선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선발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로 인해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불합격 처리함)

가. 3년특례(모집인원내 : 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자자녀, 기타재외국민자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 ※ 의학과의 경우 추가제출서류(AP, SAT, GCE-A Level, IB등 해외 학력평가 자료 등) 제출 가능함(15개 이내)
- ※ 추천서 제출 불가

No	제출서류	영주교포 자녀	해외근무자자녀					기타재외국민자녀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비 고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상사 직원자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자녀	외국파견 대학 전임 교직원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자녀	해외현지 회사근무자 자녀	해외현지 자영업자 자녀	해외선교사 및 유학생 자녀		
1	입학원서	○	○	○	○	○	○	○	○	○	○	본교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의학과, 간호학과만 해당)	○	○	○	○	○	○	○	○	○	○	
3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	○	○	○	○	○	○	○	○	○	
4	해외학교 관련기록표	○	○	○	○	○	○	○	○	○	○	
5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	○	○	○	○	○	○	○	외국학교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6	초·중·고 재학증명서(학생부)	○	○	○	○	○	○	○	○	○	○	
7	초·중·고 성적증명서(학생부) (초등학교의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중 하나만 제출해도 무방함)	○	○	○	○	○	○	○	○	○	○	
8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1부, 부 또는 모 1부)	○	○	○	○	○	○	○	○	○	○ (학생 또는 부모)	
9	출입국사실증명서◆	○ (부, 모,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부, 모, 학생)	○ (부, 모, 학생)	○ (부, 모, 학생)	○ (학생-한국 및 외국 모두)	발행처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www.minwon.go.kr)
10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본교소정양식)	○ (부, 모,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부, 모, 학생)	○ (부, 모, 학생)	○ (부, 모, 학생)	○ (학생)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여 제출
11	여권 사본◆	○ (부, 모,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부, 모, 학생)	○ (부, 모, 학생)	○ (부, 모, 학생)	○ (학생)	
12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해외거주사실증명서)	○ (부, 모,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보호자, 학생)	○ (부, 모, 학생)	○ (부, 모, 학생)	○ (부, 모, 학생)		발행처 : 해외주재영사관 또는 외교부 별관(종로구) 영주교포 자녀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필증도 가능함
13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 (보호자)		외국근무장소 및 기간 명시 유학생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로 대체가능
14	해외사업자등록증 또는 현지 법인 등기부등본							○ (보호자)	○ (보호자)			
15	현지 법인 법인세 납부이력 (개인소득세로 대체가능)							○ (보호자)				
16	해외세금납입증명서 (학생의 학력요건과 동일기간)								○			
17	해외자사설치인증서 사본 (해외직접투자증명서)			○								
18	해당기관장의초청서						○					
19	파송선교사확인서									○		대상 : 선교사자녀
20	재학사실증명서									○		대상 : 유학생자녀
21	성적증명서									○		
22	영주권사본(부,모,학생)	○										영주권 취득일 명기
23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재외국민 표기가 된 주민등록등본	○ (부, 모, 학생)									○ (학생)	
24	외국인등록증 및 시민권 사본										○ (학생)	국적취득일 명기
25	의학과 추가제출서류 목록표	○	○	○	○	○	○	○	○	○	○	의학과만 해당 (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 ◆ 서류 제출 대상자 중 [보호자]는 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하는 보호자(근무자)를 의미함
- ▶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자인 최종합격자는 **2020.02.25.(화)까지** 외국에서 발행된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미인정), 성적증명서(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포함)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apostille)'를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학교 소재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
- ▶ 12년특례 의학과,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는 추천서 제출 불가
- ▶ 원서접수 당시 3년 특례의 3년 기간 미충족자로서 3년 충족 예정자인 최종합격자는 **2020.02.25.(화)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 재외한국학교(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15개국 33개 학교, 2018.04.01. 기준)에서 발급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는 학교장 확인(직인)이 있을 경우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포함) 없이 제출 가능함**
- ▶ 부모의 이혼, 사망, 동거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함



나. 12년특례 및 새터민(모집인원외 : 전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새터민)

- ※ 의학과의 경우 추가제출서류(AP, SAT, GCE-A Level, IB등 해외 학력평가 자료 등) 제출 가능함(15개 이내)
- ※ 추천서 :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를 제외한 모든 지원자는 추천서 제출 불가

No	제출서류	전교육과정 이수자			비 고
		재외국민	외국인, 결혼이주민	새터민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	○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 후 출력하여 제출
2	자기소개서(본교소정양식)	○	○	○	
3	추천서(본교소정양식)			○	새터민 의학과, 간호학과만 해당함
4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5	초·중·고 재학증명서(학생부)	○	○		
6	초·중·고 성적증명서(학생부)	○	○		
7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	새터민 의학과, 간호학과 지원자 중 해당자만 제출
8	여권 사본(학생)	○	○		
9	전가족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부,모,학생))	○	○		외국인의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가족관계 증빙서류
10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		발행처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www.minwon.go.kr)
11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학생) (본교소정양식)	○	○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직접 작성하여 제출
1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이상 성적증명서(수험표)	○	○		※ 단,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졸업자는 제외함 ex) 천진한국국제학교 등
13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증명서(학생)	○			발행처 : 해외주재영사관 또는 외교부 별관(종로구)
14	외국국적 증명서 (학생 :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		
15	외국인등록증(학생)		○		국적취득일 명기
16	새터민 등록확인서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17	학력증명서			○	관련 법령에 의해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서류
18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미제출 시에도 자격요건과는 무관하나, 새터민장학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9	혼인관계증명서		○		결혼이주민만 해당
20	의학과 추가제출서류 목록표	○	○	○	의학과만 해당(추가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 ▶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해외학교 관련기록표는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2019.07.12.(금)까지**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자인 최종합격자는 **2020.02.25.(화)까지** 외국에서 발행된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는 미인정), 성적증명서(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포함)에 대하여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apostille)’를 발급 받아 제출하거나, 학교 소재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발급 받아 제출
-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함
- ▶ 재외한국학교(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15개국 33개학교, 2018.04.01.기준)에서 발급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는 학교장 확인(직인)이 있을 경우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포함) 없이 제출 가능함
- ▶ 부모의 이혼, 사망, 동거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증빙서류를 제출
- ▶ 원서 접수시점 기준 TOPIK 성적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019년도 제65회 TOPIK시험 응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수험표 등)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19.08.05.(월)까지 3급 이상의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미제출 시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처리)



종류	새터민장학
장학금	입학금 및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국비 50%, 교비 50%)
자격	등록자 전원

※ 장학 유지조건은 본교 학생처의 새터민장학 유지조건에 따름(문의 : 031-219-2038)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의 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의 2% 선발) 전형의 지원자격을 표준화함

- 1)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
- 2) 다만,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부모의 신뢰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로 시행하되, 공통 지원자격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

구분	2020학년도 까지	2021학년도 이후	비고
학생 이수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고교 1년 포함 중·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본교의 경우 2020학년도와 변동 없음
체류기간	대학 자율 시행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임

- 3)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나.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해외발급 서류(아포스티유 확인서, 영사확인 서류 등)도 반드시 원서접수 시점(서류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2호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국가에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국가에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구분	내용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구분	내용
전 교육과정이수자의 정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3. 초·중·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구분	내용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의 정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모집요강

02 지원자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수시모집 합격자의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2.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3.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6회)
4. 입학원서 작성 요령
5. 입학원서 접수 절차 및 방법
6.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7. 서류제출 유의사항
8. 합격자 발표 안내
9. 신입생 등록금
10. 등록포기 및 환불
11. 입학전형 부정에 대한 조치
12. 신입생 기숙사 입사안내
13.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01 수시모집 합격자의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가. 복수지원 금지

- 1)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수시모집 합격자(최초, 총원)는 등록(등록이란 문서 등록 또는 등록예치금을 납부한 상태를 의미함)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학이 실시하는 이후 모집(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나. 이중등록 금지

- 1) 모집시기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한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2) 수시모집 합격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수시모집에 복수로 합격한 자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최종적으로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함
- 3) A대학에 합격하여 등록한 수험생이 B대학에 합격하여 B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A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표현(예치금/등록금 환불신청 접수 등)한 후 B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02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1)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 2)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전문대학·각종학교(폴리텍대학, 경찰대학,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과학기술원, 한국농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등)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03 수시모집 지원 횟수 제한(6회)

- 1)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포함(단, 부모 및 학생 모두 순수 외국인인 경우 제외)), 횟수 계산 기준은 전형임
- 2)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수시모집에서 타 대학 및 동일대학의 다른 전형에 지원한 횟수를 포함하며,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6회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3)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 접수된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됨

04 입학원서 작성 요령

- 1)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창구 접수 없음)
- 2) 지원학과는 모집단위의 학과명을 선택
- 3)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의 작성 오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 4)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등본 등 모든 제출 서류와 일치하여야 함(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연락처 변경 등 원서 접수 사항과 학생부의 자료가 상이한 경우 『지원자 인적사항 및 전산자료 수정요청서』(본교 양식)를 작성하여 입학처로 제출해야 함)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초본을 동봉하여 제출

- 5) 인터넷 원서접수 시 **본인의 사진 파일(JPG)**이 필요함

05 입학원서 접수 절차 및 방법

- 1) 입학처 홈페이지(www.iajou.ac.kr) 또는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접수
- 2) 로그인(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후 로그인)
- 3) 아주대학교 선택(원서접수 대학 중 선택)
- 4) 원서접수 유의사항 확인
- 5) 입학원서 작성/사진 업로드
- 6) 전형료 결제(결제 전 입력 사항 반드시 확인, 전형료 결제 후 수정 불가)
- 7) 원서접수 완료(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임)
- 8) 수험표 출력 및 제출서류 봉투표지 출력
- 9) 서류제출(해당자) : 전형별 제출서류를 마감일까지 제출(등기우편, 택배, 방문제출 가능)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전형료 결제 후에도 기본정보 및 사진 수정이 가능함
(전형명 지원학과는 수정 불가하며, 원서접수 마감 후에는 전체 수정 불가함)

06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동일 모집시기에 접수된 입학원서가 2장 이상일 경우 지원자격을 취소
- 2) 원서접수는 전형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인정됨(**접수기한 내 결제 미완료 시 접수 무효**)
- 3) **전형료 결제 후 접수가 완료된 원서는 지원 철회나 전형/학과 변경, 환불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지원서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므로 신중을 기하여 접수해야 함(전형료 결제 이전에는 수정 가능)
- 4) 원서접수 여부 및 경쟁률은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 가능
- 5) 수험표는 원서접수 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함**
- 6)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나 마감일에는 17:00까지만 가능
- 7) 문의처
- 입학처 Tel : 031-219-3981, 2021 Fax : 031-213-5174

07 서류제출 유의사항

- 1) 제출서류는 전형별 해당 서류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기한 내 미제출 또는 서류 누락 시 해당 서류 미반영 또는 자격미달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2) 서류 발송 시 일반 서류봉투(A4사이즈)에 제출봉투표지(원서접수 시 출력)를 부착하고, 제출서류 해당 □ 란에 체크(✓)하여 제출(등기우편, 택배, 방문 제출 가능)
- 3) 모든 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제출 시에는 발급기관(출신학교 등) 또는 본교 입학처의 원본 대조필이 있어야 함.(원본대조필은 입학처에 직접 방문하여 사본 대조 후 받을 수 있음)
- 4) 제출서류 발송 시 각 서류의 중앙 하단에 반드시 수험번호를 기재
- 5) 수험표는 원서접수 후 출력하여 본인이 보관하고, 전형당일 수험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사진, 생년월일 표기), 동사무소 발급 임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함
- 6) 수험생은 본교 홈페이지 입학안내에서 **제출서류 도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문의 : 031-219-3981, 2021)

※ **아주대학교 주소** (우)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율곡관 102호 입학처 재외국민 원서접수 담당자

08 합격자 발표 안내

- 1) 합격자는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자세한 사항을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안내 예정

※ 합격 여부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단, 미등록총원을 하는 전형은 학교 사정에 따라 전화로 통보할 수도 있음)

09 신입생 등록금

- 1) 합격생은 각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정해진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장학생의 경우에도 장학 결제를 진행해야함)
- 2) 합격사실이 있는 지원자는(합격 후 미등록자 포함) 수시전형 합격 사실이 있으므로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3) 국가보훈대상자 등록금 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업료 등의 면제)에 따른 등록금 면제 대상자는 본 등록 기간 10일 전까지 보훈장학 신청서를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며, 입학 후 별도 환불 처리함)

※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내에 반드시 등록처리를 마쳐야 함
 ※ 국가보훈대상자 장학 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 031-219-2038, 입학팀 031-219-2024
 ※ 등록금 대출 관련 : 학생지원팀 031-219-2036
 ※ 신입생 장학 관련 : 입학팀 031-219-2024

10 등록포기 및 환불

- 1) 대상 : 본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자
- 2) 신청방법 : 입학처 홈페이지 신청(www.iajou.ac.kr)
- 3) 유의사항
 - 환불신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등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안내사항 참고
 - 총원합격 통보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에 대한 합격기회 박탈 및 해당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타대학 등록결정 즉시 지체 없이 환불 신청을 해야 함(마감일 이전 필수)
[기일 경과 후 환불신청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임]
 - 환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최초/총원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참고

11 입학전형 부정에 대한 조치

- 1) 입학원서 접수 시 제출한 **제반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지원자격미달, 주요사항 누락** 등 입학전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2) 고교졸업예정자의 본교 입학 시까지 졸업 불가 또는 체류일수 미달 등 자격요건 미달사항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므로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해야 함**
- 3)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 4)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취소 및 민·형사상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교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일정기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음(세부사항은 본교 규정에 따름)

12 신입생 기숙사 입사안내

1) 신입생 입사순위

입사순위	대상
1순위	기숙사 입사해택 장학생
2순위	지방학생
3순위	경기지역 원거리 학생
4순위	서울지역 원거리 학생

※ 상기 순위 기준에 따른 동점자 발생 시에는 입사희망동, 실제 거리, 외국인 룸메이트 동의여부(국제학사 해당), 방학 중 입사 희망여부 등에 따라 입사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2) 신입생 기숙사 입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유의사항으로 별도 공지할 예정
- 3) 재외국민특별전형 합격자의 경우, **해외거주사실증명서(관련서류)**를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예정

13 기타 수험생 유의사항

- 1) 입학전형 결과 적절한 학력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수학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 및 순위와 상관없이 입학사정회의의 결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2) 기타 입학전형 진행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험생 유의사항으로 공지
- 3) 입학원서 접수 후 해당 전형유형별 지원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자격미달로 불합격 처리하고, 추후에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함(**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 4)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아주대학교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입학처(울곡관 102호)
 Tel : 031-219-3981, 2021 Fax : 031-213-5174
 www.iajou.ac.kr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모집요강

03 서식자료

- 1. 자기소개서(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공통)
- 2. 자기소개서(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
- 3. 추천서(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
- 4.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 3년특례
- 5. 해외학교 관련 기록표
- 6. 추가제출서류 목록표(의학과)
- 7. 사실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 8. 지원자 인적사항 및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



01 자기소개서(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공통)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3년특례 의학과, 3년특례 간호학과
12년특례 전체)

자기소개서 (견본 – SAMPLE)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인터넷으로 작성, 추후 일부 변동가능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과	학과																		
고등학교명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 서류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확인사항]

- 1. 본인은 자기소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2. 본인은 귀교가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 3.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 4.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친인척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실명 및 추상적 직종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은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감수할 것입니다.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작성(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며, 전형별로 자기소개서 문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되어있지 않은 내용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7월 12일(금) 18:00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인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는 출신학교장(또는 발행기관장)이 원본 대조필한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증빙서류는 A4용지 크기의 사본으로 제출하고, 제본하거나 클리어 파일을 사용하지 말고 클립이나 사무용 집게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아주대학교 총장 귀하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성화면에 게시된 문항별 제한분량을 확인하고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Use KOREAN ONLY!!

1. 자신의 성장 과정과 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세요(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2. 지원 동기와 지원 분야의 진로 계획을 위해 어떤 노력과 준비를 해왔는지 기술하고, 본인에게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교내 활동을 기술하세요.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3. 대학 입학 후 학업 계획과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하세요(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 새터민 의학과, 새터민 간호학과

자기소개서 (견본 – SAMPLE)

※인터넷 원서접수 시 인터넷으로 작성, 추후 일부 변동 가능

성명		수험번호											
지원학과	학과												
고등학교명													
연락처	자택 :						휴대폰 :						

서류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자기소개서 확인사항]

- 본인은 자기소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 본인은 귀교가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 본인은 이 자기소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 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부모(친인척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실명 및 추상적 직종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은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감수할 것입니다.

※ 자기소개서는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작성(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하며, 전형별로 자기소개서 문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 자기소개서에 기술한 내용 중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 되어있지 않은 내용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7월 12일(금) 18:00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인정)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증빙서류는 출신학교장(또는 발행기관장)이 원본 대조필한 사본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증빙서류는 A4용지 크기의 사본으로 제출하고, 제본하거나 클리어 파일을 사용하지 말고 클립이나 사무용 집게로 묶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아주대학교 총장 귀하

있습니다. 작성화면에 게시된 문항별 제한분량을 확인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 출력하여 작성, 추후 일부 변동 가능

성명	수험번호	
연락처	지원학과	학과

추천인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또는 집)	
E-mail	휴대전화	
소속	지원자와의 관계	
교류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 아래 사항은 추천인이 교사인 경우만 작성해주세요.		
지도과목	교사경력 년 개월	

1. 추천인(지인)의 자격은 제한이 없으나 지원자를 오랜 시간 지켜보신 분으로 추천서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해주시길 수 있는 분이여야 하며, 교사가 아닌 경우 교류 내용에 대한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추천할 수 없는 사람** : 학원강사 및 학원장, 과외교사, 본인, 가족, 친척, 친구, 기타 특수관계자
2.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전형과정에서 추천서와 기재 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작성한 추천서는 **피추천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밀봉한 상태로** 학생 제출 서류와 함께 **7월 12일(금) 18:00까지** 등기 우편, 택배, 방문 제출중 1가지 방법으로 제출하십시오.(당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하단의 추천인 서명을 반드시 추천인 자필로 해야 합니다.**
5. 지원자의 학업 및 잠재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지원자 제출서류에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추천서 작성 시 **부모(친인척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실명 및 추상적 직종명(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등)은 기재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감수할 것입니다.
7. 파일로 본문을 작성할 경우 추천서의 서식, 글자크기, 줄간격 등을 절대 수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추천서를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2. 본인은 추천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자와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귀교가 이 추천서와 관련하여 내용 확인을 요청할 경우 협조할 것입니다.
4. 본인은 추천서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 기재, 대리 작성, 기타 부적절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등 추천인 확인 서약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위약할 경우에는 향후 귀교가 시행하는 입학전형에서 추천인 자격을 제한받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5. 본인은 추천서 작성 시 지원자의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 기재가 금지되며, 기재 시 면접 감점 또는 0점 처리의 불이익이 있음을 확인하고, 감수할 것입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아주대학교 총장 귀하



추천서

1-1. 지원자의 인성 및 대인관계에 대하여 "V"로 표기하고, 평가에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례 또는 그렇게 평가한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평가항목	평가대상			미흡	보통	우수함	매우 우수함	탁월함	평가 불가
	3학년 전체	계열 전체	학급 전체						
1) 책임감	☐	☐	☐	☐	☐	☐	☐	☐	☐
2) 성실성	☐	☐	☐	☐	☐	☐	☐	☐	☐
3) 준법성	☐	☐	☐	☐	☐	☐	☐	☐	☐
4) 자기주도성	☐	☐	☐	☐	☐	☐	☐	☐	☐
5) 리더십	☐	☐	☐	☐	☐	☐	☐	☐	☐
6) 협동심	☐	☐	☐	☐	☐	☐	☐	☐	☐
7) 나눔과 배려	☐	☐	☐	☐	☐	☐	☐	☐	☐

* 평가대상 부분은 지원자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만 체크하여 주십시오

1-2. 위 평가항목 중 구체적 사례를 열거할 수 있는 경우 적어 주십시오.(굴림체, 글자크기 10, 띄어쓰기 포함 글자수 500자 이내)

2. 지원 학과(의학과 또는 간호학과)를 고려하여 지원자의 학업·비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추천하여 주십시오.(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을 그대로 반복 기술하지 말아 주십시오)(굴림체, 글자크기 10, 글자수 띄어쓰기 포함 1,000자 이내)

※ 가급적 1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SAMPLE-인터넷 원서접수 시 작성, 추후 일부 변동 가능) 초·중·고 수학기간 기록표 - 3년특례

성명			생년월일			수험 번호								
지원 구분	3년 특례	☐ 영주교포자녀 및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 해외근무공무원자녀 ☐ 해외상사직원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녀 ☐ 외국파견 대학 전임 교직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자녀 ☐ 해외현지회사 근무자 자녀 ☐ 해외현지자영업자 자녀 ☐ 해외선교사 및 유학생자녀												

과정	재학학년, 학기	재학기간 (YYMMDD)	학교명	소재국
ex)초등	1-1 ~ 6-2	09.03.02. ~ 14.02.28.	중앙초등학교	한국
ex)중등	7-1 ~ 9-1	14.03.02. ~ 16.06.30.	중앙중학교	한국
ex)중등	9-2 ~ 9-2	16.08.01. ~ 16.12.31.	Central Middle School	필리핀
ex)고등	10-1 ~ 11-2	17.04.02. ~ 18.11.30.	Central High School	미국
ex)고등	11-2 ~ 12-2	18.12.01. ~ 20.02.28.	중앙고등학교	한국

(필요 시 행 추가)

국내학교 총 재학학기 수							외국학교 총 재학학기 수							
학력요건			통산 3년(6학기)에 해당하는 학기에 ○ 표기 (6개 이상 표시)											
			고등학교(10학년 ~ 12학년) 중 1년(2개 학기)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학년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학력요건 해당학기														
학력요건 기간 중 지원자 총 외국체류기간			개 월				※ 해당국 거주 기간에서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한 순수 외국 체류기간을 입력(방학기간, 공휴일 포함)							
학력요건 기간 중 재학 학교							※ 재학학교가 둘 이상인 경우, 재학기간이 긴 학교를 선택							
특 이 사 항	보호자의 이혼, 사망 지원자의 중복수학학기, 월반, 특정 학기 성적기록 누락, 휴학, 13학년제(영국제) 학교 등 특이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재													

구 분	학력요건기간 중 외국거주기간 (발령, 영주 등)	영주(시민)권 취득일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주 학기 수	거주 국가명
보호자1 ()	~			
	~			
	~			
	학력요건 기간 중 보호자1의 총 외국 체류기간			개 월
보호자2 ()	~			
	~			
	~			
	학력요건 기간 중 보호자2의 총 외국 체류기간			개 월

위 기재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해외학교 관련 기록표
(SAMPLE-인터넷 원서접수 시 작성, 추후 소폭 변경가능)

성명		생년월일		수험 번호										
지원 구분	모집인원내	☐ 영주교포자녀 및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 해외근무공무원자녀 ☐ 해외상사직원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자녀 ☐ 외국파견 대학 전임 교직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자녀 ☐ 해외현지회사 근무자 자녀 ☐ 해외현지자영업자 자녀 ☐ 해외선교사 및 유학생자녀												
	모집인원외	☐ 12년 전교육과정 이수자(외국인, 결혼이주민) ☐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 새터민												

학 교 명	1학기 시작시기	주 소 (학교 홈페이지 주소, e-mail 주소 포함)	비고
		주소 (address): 학교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address): 학교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address): 학교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address): 학교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address): 학교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address): 학교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주소 (address): 학교홈페이지: e-mail: 전화번호: FAX번호:	

※ 재학한 외국소재 학교만 초, 중, 고교 순으로 기재하고, 해당 학교의 공식 명칭을 기입할 것.
※ 전화번호, Fax번호는 국가코드를 포함하여 「(국가코드)-(지역코드)-(전화번호)」 형태로 기재
(예 : 한국 82-2-2173-2074)
※ 학교명 및 주소는 영어로 정확히 기재

위 기재 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또는 서명)

추가제출서류 목록표 (의학과)
(SAMPLE-인터넷 원서접수 시 작성, 추후 소폭 변경가능)

성명		생년월일	YYYY.MM.DD	수험 번호										
지원 구분	3년특례	☐ 영주교포자녀 및 본인만 외국인인 외국인 ☐ 해외근무공무원자녀 ☐ 해외상사직원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근무자자녀 ☐ 외국파견 대학 전임 교직원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자녀 ☐ 해외현지회사 근무자 자녀 ☐ 해외현지자영업자 자녀 ☐ 해외선교사 및 유학생자녀												
	12년특례 및 새터민	☐ 12년 전교육과정 이수자(외국인, 결혼이주민) ☐ 12년 전 교육과정 이수자(재외국민) ☐ 새터민												

1. 추가제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본 양식을 작성한 후, 아래 목록표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추가제출 서류를 정리하여 제출
 2. 추가제출 서류는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추가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3. 추가제출서류는 총 A4 단면 15쪽 이내로 제출(1페이지에 1개 내용만 출력, 모아찍기 불가)
 4. 집계 혹은 클립 사용(스테이플러, 제본, 스프링제본, 클리어파일 사용 불가)
 5. 추천서는 추가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 ※ 상기 각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평가 시 미반영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번호	서류내용 (성적자료의 경우 성적값도 기재 예: SAT 1000점)	서류발급기관	서류 발급일자	비고
1	예) 재학원 봉사활동 경력: 치매노인 돌봄 활동120시간	00복지관	2019.04.3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SAMPLE-직접 출력하여 작성, 추후 소폭 변경가능)

사실증명 발급신청 위임장

(APPLICATION FOR ISSUANCE /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1. 색상이 어두운 란만 신청인이 작성합니다.(보호자 및 학생 본인 각각 1부씩 작성)
2. 보호자, 학생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예: 여권사본)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 신청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접수번호 (Receipt No.)	접수일 (Receipt Date)	발급일 (Issue Date)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Principal (Authorizing Person)	성명 (Full name)		연락처 (Phone No.)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 (Alien Registration No.))			
증명종류 Type of Certificate	[v]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통 Certificate of Fact on Entry and Exit (1) copy(ies)			
출입국 조회기간 (Reference Period For Entry and Exit) . . . 부터(from) . . . 까지(to)				
※ 학력요건(3년 또는 12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입력				
용도 (Purpose) 대학입시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Applicant (Authorized Person)	성명 (Full name) 아주대학교 입학처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전화번호 (Telephone no.) 031-219-2024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Relationship to Principal) 대학 입학 심사자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I hereby apply for the issuance or inspection of Certificate of Fact under Article 88 of Immigration Act and Article 75 of Enforcement Rules of the Immigration Act.

신청인 Applicant Name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signature or seal)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To the Chief of Immigration Office(Branch Office)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I, the above Principal(authorizing person), hereby authorize the above applicant(authorized person) to apply for and receive the Certificate of Fact.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Name of Principal(Authorizing Person)	년 Year	월 Month	일 Day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지원자 인적사항 및 전산자료 수정 요청서

(SAMPLE-직접 출력하여 작성, 사유발생시 작성, 추후 소폭 변경가능)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만 팩스로 발송(031-213-5174)
2.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입학처로 전화문의(031-219-2024) 후 팩스로 발송

모집시기	2020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모집단위	학과	전 형 명	재외국민과 외국인특별전형
수험번호		성 명	
연 락 처		보호자 핸드폰	
변경사항			
수정 요청	변경전		
	변경후		
변경 사유 (자세하게 기록)			
전형 및 모집단위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지원자 (서 명)			

※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를 첨부하여 제출